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2. 16 선고 2012가합54137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1. 서울신용보증재단

2.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(원고 신용보증재단의 피고 C에 대한 소 부분)

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보조참가인

서울신용보증재단

피고1. 주식회사 D

2.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

3. E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E의 파산관재인 B

4. C

변론 종결2014. 11. 18.

판결 선고2014. 12. 16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D,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, E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E의 각 파산관재인 B는 연대하여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게 233,106,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11. 9.부터 2014. 3. 13.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피고 주식회사 D,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, E의

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E의 각 파산관재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,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,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(이하 '원고 재단'이라 한다)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(이하 '원고 소송수계인'이라 한다)에게 46,359,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

1) 피고 주식회사 D(이하 '피고 회사'라고 한다)은 원고 재단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1 내지 3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(이하 '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하고, 아래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 재단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.

1차 2009. 5. 28.	2014. 5. 27.	50,000,000원	F	국민은행	50,000,000원
2차 2010. 4. 14.	2014. 4. 14.	47,500,000원	G	기업은행	50,000,000원
3차 2011. 4. 19.	2012. 4. 19. (2013. 4. 19.)	170,000,000원	H	기업은행	200,000,000원

2)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, 원고 재단은 피고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위변제하고, 피고 회사는 원고 재단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재단이 정한 비율(2010. 4. 20.부터 연 15%)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A, E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재단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원고 재단의 대위변제

피고 회사가 2012. 5. 29. 대출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, 원고 재단은 2012. 11. 9.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28,822,584원을 대위변제하였고, 기업은행에게 206,305,336원(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32,273,205원 + 3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174,032,131원)을 대위변제하였다가 2,021,730원(384,960원 + 1,636,770원)을 회수하였다.

다. 매매계약의 체결

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. 7. 11.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대금 7,500만 원에 매도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하고,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. 7. 13. 접수 제277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라. A와 E의 파산신청 및 소송수계

A와 E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. 10. 18. 각 파산을 선고받았고(A: 2012하단7469, 2013하면7469, E: 2012하단7468, 2012하면7469), 각 파산관재인으로 B가 선임되었다. 파산관재인은 A와 E에 관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가 제1 내지 7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갑나 제1, 2호증, 을라 제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재단의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회사, 피고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, E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E의 각 파산관재인 B는 연대하여 원고 재단에게 남은 대위변제금 합계

233,106,190원(28,822,584원 + 206,305,336원 - 2,021,730원)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. 11. 9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최종 송달일인 2014. 3. 13.까지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원고 소송수계인의 부인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소송수계인의 주장

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'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'에 해당하므로 부인되어야 한다. 그런데 위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.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46,359,9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1)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고,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(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다56637, 56644 판결 등 참조).

2)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위 매매계약으로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다. 이러한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,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 재단을 비롯한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원고 소송수계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인할 수 없다.

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.

㉞ 피고 C은 A를 대리한 그의 오빠 I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위 매매계약에서 피고 C은

계약 당일 계약금 5,000만 원, 2012. 8. 11. 잔금 2,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, I은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각 정하였다.

㉡ 피고 C은 I에게, 계약 당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으로 계약금 5,000만 원을, 2012. 8. 3. 친구 J로부터 차용한 1,300만 원을 보태어 잔금 중 2,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.

㉢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업무처리를 법무사 K에게 맡기고,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그 비용 2,388,645원 중 2,388,000원을 I에게 송금하였다.

㉣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, 채권최고액 5,200만 원, 실제 피담보채무액 40,890,41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, I은 2012. 7. 25.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.

㉤ 피고 C은 2012. 8. 17.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,500만 원을 대출받았고, 즉시 J에게 차용금 1,300만 원을 변제하였다. 피고 C은 현재까지 매월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다.

㉥ 피고 C은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L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로써 나머지 잔금 지급을 갈음하였다. 그리고 2014. 1. 15.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예정인 제주블루오션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송금받아 곧바로 L에게 반환하였다.

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C은 I에게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.

③ 피고 C이 A가 아닌 I과 계약을 체결한 점, 피고 C의 금전거래내역,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, 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A를 알지 못하였고 그 재무상태도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.

④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정상적인 시세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. 또한 계약금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고, 잔금 지급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지긴 하였으나,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부담하여야 했고, 장기간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에 이 사건

매매계약의 이행을 모두 완료해야 했던 점을 고려하면, 위와 같은 경위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.

[인정근거]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, 올라 제1 내지 8,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,

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의 사실조회회신, 변론 전체의 취지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 재단의 피고 회사, 피고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, E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E의 각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,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.

재판장판사김연하

판사이지웅

판사장민하

별지